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9,266,403	9,277,992
일반회계	290,092,201	8,702,766
특별회계	19,174,202	575,226
기타특별회계	19,174,202	575,2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08,902	156,267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640,987	19,230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358,334	10,750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590,000	17,7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45,674	40,370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4,088,640	122,659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2,866,202	85,986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064,000	31,92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3,001,310	90,039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0,153	305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안)"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03,12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